

council.chungnam.go.kr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

2024
이
의정
정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차

I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3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6
	•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	9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11
	•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II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9
	•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	21
	•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23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26
	•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33

III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35
	• 교권회복 방안 모색	37
	•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방안 마련	45
	•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55
	• 청년 스마트팜, 충남 농업을 말하다	67

IV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75

- “도민 교통서비스 안정성 높일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77
- 도의회·도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협업성과 ‘톡톡’ 79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직업계고 활성화 토론회 개최 81

V 최근 제·개정 법령 83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5
- 지방세법 시행령 92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100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9

VI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35

- 완주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3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 141



—
I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

[시행 2023. 12. 22.] [경기도조례 제7825호, 2023. 12. 22., 제정]

이 조례는 경기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핵심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 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 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경기도 중

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하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보안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관리 현황
3.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진단, 보안컨설팅,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
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 지원
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보안 인식강화 교육
4. 산업보안 기술 관련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산업핵심기술 보호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유출의 피해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

- 3. 산업핵심기술 유출 발생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 4. 산업핵심기술 유출 신고·처리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보안 관련 정부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보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산업보안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7.] [부산광역시조례 제7162호, 2023. 12. 27., 제정]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학습 형태가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여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온라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구축된 정보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4.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도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양질의 학습자원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있어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생애주기별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과정 운영
2.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
3.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4. 민간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 연계 및 제공
5.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콘텐츠 개발 및 임차)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 등을 할 수 있다.

1. 직접 개발
2. 평생교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우수 콘텐츠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
3. 법인 등과의 교류를 통한 콘텐츠 공공 개발·활용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강의 수강권

및 교재

2. 학습·진로·진학·취업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등

3. 학습지도 및 상담 등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지원대상자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민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및 각종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

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28.] [울산광역시조례 제2865호, 2023. 12. 28., 제정]

이 조례는 산업현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적극 방지하도록 지원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폭발사고”란 산업 현장에서 가연성 가스나 증기 또는 분진 등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급격한 압력상승 및 열이 발생되어 폭발, 화재, 파열 등을 동반하는 현상으로 주변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발사고 방지(이하 “방폭”이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폭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방폭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효과적인 방폭 안전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방폭 안전관리 대상 현황
3.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방폭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방폭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유해·위험물질 사업장 및 취급시설, 방폭 설비 설치 관련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방폭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방폭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안전·화재·폭발 업무 소관별 실·국·본부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산업안전·화재·폭발·전기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
3. 산업안전·화재·폭발·전기안전 분야 전문가
4. 산업안전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방폭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단 안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방폭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방폭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방폭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28.] [전라남도조례 제5919호, 2023. 12. 28., 제정]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청년: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

나. 신혼부부: 부부 모두 청년이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2. “전남형 만원주택”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청년층에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완화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방향

2.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3.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4. 신청 및 지원절차

5. 지원 중지, 환수 및 퇴거

6. 입주신청서 등 각종 서식

7. 운영 주체, 관리 방법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또는 도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2.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개선공사 등을 포함한다)
3.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홍보
4.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남형 만원주택 규모) 전남형 만원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로 한다.

제6조(사업대상지의 선정) 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대상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2. 공업단지, 산업단지 등 청년층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
- ②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전남형 만원주택의 사업자) ① 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전남형 만원주택 공동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격) ① 전남형 만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무주택가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3. 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 가능일(신축 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거나 창업 등이 예정된 청년층
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공급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등) ① 전남형 만원주택의 월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임대 기간 종료 또는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전남형 만원주택의 거주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지위가 변경되어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새롭게 거주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과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0조(만원주택 지원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2.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3. 제5조에 따른 규모
4. 제6조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
5. 제7조에 따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자 선정

6. 제9조에 따른 임대료 등

7. 제11조에 따른 전남형 만원주택 위탁 관리기관 선정

8.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주거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1조(운영·관리 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층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도 주거복지센터
3. 그 밖에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위탁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전남형 만원주택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제12조(업무협약) 도지사는 만원주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융기관의 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7조의 사업대상지 선정
2. 제8조의 사업자 선정
3. 제12조의 운영 또는 관리, 위탁
4. 그 밖에 청년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과정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30호, 2023. 12. 18., 제정]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뿌리깊은 가게”란 세종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지역 골목상권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뿌리깊은 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읍·면 지역에서 20년 이상, 동 지역에서 1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를 뿌리깊은 가게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깊은 가게의 사업명칭 및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뿌리깊은 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뿌리깊은 가게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뿌리깊은 가게 지원) 시장은 뿌리깊은 가게의 육성·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깊은 가게 인증 및 인증현판 제작
2. 뿌리깊은 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필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뿌리깊은 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폐업된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뿌리깊은 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의 역사와 문화, 선정 업종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 주무관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II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26.]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47호, 2023. 12. 26., 제정]

이 조례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 절약·재활용을 통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산 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비우산 사업”이란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수리·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사업”이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 우산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비우산 사업
2.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사업

제4조(지원대상) ① 단비우산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초등학교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운영되는 우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에서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해 주거나, 버려지는 우산 등을 수리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된 우산을 공공기관, 공원, 지하철역사 및 학교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갖추어두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등학교에 안심우산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단비우산 사업에 필요한 인력, 비용 및 우산 수리 기술자 양성 교육을 직접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①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리센터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리가 완료된 우산은 신청한 사람이 직접 수령한다.

② 수리할 수 없는 우산은 기증받아 그 부품을 다른 우산 수리에 적극 이용한다.



③ 우산의 수리 및 대여 비용은 무료로 한다.

④ 시장은 수리 신청을 받은 우산을 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우산의 대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대여한 장소에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우산 수리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단비 우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우산

수리 기술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관리비, 수도, 전기요금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천시 단비우산 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부천시 단비우산 대여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12. 29.]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3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이 조례는 문경시 귀향인·귀촌인·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귀향·귀촌·귀농 보금자리용 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량철골조 모듈주택(이하 “모듈주택”이라 한다)”이란 귀향·귀촌·귀농(이하 “귀농귀촌”이라 한다)을 준비하는 귀농귀촌인에게 한시적 거주와 정보교류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모듈주택의 시설을 사용하는 귀농귀촌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및 기간) ① 모듈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자.<개정 2023.12.29.>
2.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단,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택을 착공한 자 중 3개월 이내 전입한 자 가능.

② 모듈주택의 사용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③ 입주자가 주택 매입 및 완공 등으로 모듈주택을 지원한 원인이 해소될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신청 및 통지) ① 모듈주택을 사용하려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입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시에 주택을 건축 중인 자
2. 시 기업체에 취업이 확정(예정)된 자
3. 귀농인 소득작물 시범포장사업에 선정된 자
4. 세대주가 39세 이하인 자<개정



2023.12.29.>

5. 전입가능한 세대원이 많은 자 등

③ 시장은 입주자를 선정한 후 해당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 ① 모듈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며, 사용료는 재산평가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 15일 전까지 사용기간의 월 사용료 및 보증금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③ 모듈주택 내에서 전기,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퇴거 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요금 체납금, 시설물 개인변상액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입주자가 사용기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

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7조(입주자 의무 등) ① 입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듈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모듈주택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사용기간 중 시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3.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4.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6.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8.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제7조 및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입주자 일부 또는 전부가 주민 등록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제10호의 주소 확인을 위하여 입주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 사항을 매월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모듈주택을 시장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해당 모듈주택의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모듈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절차에 따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로 인한 퇴거 또는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명도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시장은

모듈주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모듈주택 소재지의 읍면동장이 시설물을 관리한다.

② 시장은 모듈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귀농귀촌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유지관리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 및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듈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듈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7.12.〉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시행 2023. 12. 29.]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893호, 2023. 12. 29., 제정]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대상)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선행 부문: 효를 실천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거나 소외계층에 헌신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청소년
2. 창의인재 부문: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청소년
3. 학력향상 부문: 교과 성적 향상 및 경진대회 입상 등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4. 문화체육 부문: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

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평창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창권자) 청소년상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제5조(시상 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상장)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7조(추천 공고) 군수는 매년 청소년상 추천 요강을 평창 이야기,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제8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

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
2. 수상 부문 관련 부서장 및 청소년 관할 읍·면장
3. 청소년 주소지 읍·면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청소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군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
5. 그 밖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은 해당 연도의 청소년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자녀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
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후보자일 경우

③ 위원회 심의·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의 심사 시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자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43호, 2023. 12. 22., 제정]

이 조례는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이하 “공공세척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620-8에 둔다.

제4조(기능) 공공세척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2.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행사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등)

-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2. 기타 다회용기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주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다회용기 및 재활용 등관련 행사
- ④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의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및 회의실, 교육실, 전시장 등의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업사이클, 생태, 에너지 등 자원 재활용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세척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7조(위탁사무) 공공세척센터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체험, 전학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과 결산) ① 수탁자는 공공세척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된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과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공공세척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세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공공세척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세척센터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2. 공공세척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세척센터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세척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할용 관련 업무 소관 실·본부·국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회의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4. 1. 5.]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13호, 2024. 1. 5., 제정]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남구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강남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

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디지털 교육 자문위원회를“서

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대행 추진 시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9조(현장체험학습)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2. 제8조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생활디지털 효사랑 업소” 인증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III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교권회복 방안 모색

- ❖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민·교사·학부모들과 “교권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주요 논의제안 내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노력이 요구됨.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3. 12. 12.(화), 14:00~16:30 / 충남도의회 303호 회의실
- 참석 : 30여명(교사, 학부모, 관계공무원 등)
- 주제 : 교권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
- ※ 신청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충남도민과 교사, 학부모,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교권회복”과 관련하여 충남의 ‘교권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학생-교원-학부모, 이 교육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최근 서이초 교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회복” 문제에 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든 참석자가 공감하였으며,
-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성문화되고 확대되는데 반해 교권을 보호하고 상호 공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늦어졌음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함.



- 또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함에 모두가 공감함.
 - 앞으로, 교육공동체 3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개정된 상위 법률에 맞게 충남교육청 조례개정 뿐만아니라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교권침해는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간 이상한 학생, 이상한 학부모, 이상한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침범하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교사의 권위와 교육활동의 전문성강화,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문화의 정착과 교육공동체 3주체간의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함.
-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처리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행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어야 함.
- 이어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 강화와 아동학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가 필요함.
- 이제는 교권보호 4법이 아니고, 교권보호 5법으로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연수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교원들의 사기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도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충남교육청은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학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회는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할 것임.

2 지정토론(4인)

① 이남훈 (천안구성초등학교 교장)

- 사회적으로 큰 소용돌이를 겪은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누적되어 그 불만을 교육현장에서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의 학부모는 IMF 당시 학생이었던 분들로 7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 초반에 출생하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IMF와 코로나 팬데믹을 모두 겪어 삶이 녹록지 않은 세대임.
- 법률적으로 보면 1995년 5월 31일 교육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음. 2020년에는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었고, 2020년대 부터는 학생 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
- 이렇게 교육 공동체의 권리가 신장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호 권리의 충돌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교권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음.
- 2016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교육활동 보호,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문화하고,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이때 지정하면서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함
- 교권보호 정책으로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확대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행·재정적 지원과 인력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실제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민원처리, 사전 학교방문 예약제 등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학급단 학생 수를 줄여서 담임선생님이 담당해야 될 학생수를 줄여야 함.
- 과거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배려와 존중의 대상이 된 것 같음. 어찌보면 서글픈 현실이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이 교권회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며 교육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

② 최선희 (공주여자고등학교 교사)

- 전제상 교수님께서 학교의 법화(法化)로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교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에 주목하는 경향으로 '교권과 학습권간의 불균형 초래'되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함
- 하지만 불균형이 곧 교권과 학습권의 충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곧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함.
-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대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임.
- 보호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개별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며 이해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교사 본인은 아동학대와 민원을 걱정하며 아이들에게 이제는 '사랑의 잔소리'를 두려워하게 되었음.
- 교사의 전문적 권위의 사회적 기반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 강화와 교원지위법 시행령에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우선조치 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의 정착이 있어야 비로소 '학교의 봄'을 올 수 있게 하리라 믿고 있음.

③ 박병일 (충남학부모회연합회 회장)

-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우리 충남학부모회연합회에서도 애도를 표하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임.
- 교권침해 사안은 대부분 극히 일부의 나쁜 학생, 나쁜 학부모, 나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 마치 전체가 다 그러한 양 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본인도 12년째 학교 운영위원회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라 여기시면 될 것임.

- 아이들 교육에 있어 국어, 영어, 수학 보다 “인성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숙되면 교권은 자동적으로 보호가 될 것이라 생각함.
- 충남 학부모회는 어느 17개 시도보다 발빠르게 교권 보호에 앞장 서 왔고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부모회가 하나가 돼서 가교 역할을 하고 지원을 하고 교권 보호에 앞장설 것임.

④ 심상주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교권보호팀장)

- 최근 3년간 충남 교육활동 침해현황을 보면 무엇보다 모욕, 명예 훼손 부분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4년간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총 72건인데, 그중 진행중인 것이 26건, 종결된 것이 46건으로 종결된 사안 중 43건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제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약 6천건이 넘는데, 그 중 유죄 처분을 받은 건수는 약 9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1.5%에 해당한다고 함. 그 이야기는 98.5%가 실제로 아동학대 건수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게 선생님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말로 해석됨.
-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충남 교권회복과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는 첫째, 교권침해 예방 방안 마련, 둘째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의 법률적인 보호 민원 처리 시스템의 강화, 마지막으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이 세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
-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선생님들은 아직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조항이 살아 있는 한 여전히 교사들은 똑같은 신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 이에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법률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충남의 주요 추진정책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강화, 피해교원 보호조치 강화, 수



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시 대응방안 강화, 변호사 동행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 확대, 민원 응대 시스템 및 학교출입 관리 강화, 교권4법 개정 주요 내용 현장적용 방안 강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교육청은 선생님들께서 교육 당국에 쏟아내고 있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공동체 3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앞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3 자유토론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항 정서적학대 부분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제상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함

[질문 : 심상주 충남교육청 팀장]

- 교육법규와 아동법규간의 상호 법률이 생긴 배경이 다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제 아동복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면 교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많은 차이가 있어 개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이 갖고 있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그 권리가 더욱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시발점으로 천천히 진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답변 :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

4 청중토론

- spo가 학교 내 경찰관이 도입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교육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경찰이 해결하게 되면 교육의 영역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 미국의 경우 spo 정책으로 인해 인종차별이나 부에 따른 차별, 혐오 문화가 더 많아진다는데 이에 대한 전제상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 : 심성훈 전교조 충남지부 조합원 / 천안오성고 수학 교사]

- 현재 학폭이라든가 악성 민원, 그리고 학교 무단 침입 이런 부분에 대한 단위 학교가 그걸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함. spo 정책으로 인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구성원들이 교육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의 지원 인력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것도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

[답변 :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

-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과실이 적은 경우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질의 : 이은주 충남교총 사무총장]

- 올해 7월 이후로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바로 하지 않고 있으며,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에만 직위해제를 하고 있음. 또한 선생님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변호사 대행서비스는 사전에 일체의 관계 서류를 변호사에게 미리 다 전달하고 진행하는 관계로 걱정 안해도 되고, 소송비의 경우 최대 3천만원 까지 확대를 하여 지원해 줄 것인데, 단 무죄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면 일괄적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음.

[답변 : 심상주 충남교육청 팀장]

5 마무리 말씀

- 우리나라가 발전한 바탕이 교육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당면 과제 중에 가장 이슈화 되는 게 땅에 떨어진 교권 회복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함
-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교원들의 최근에 어떻게 변했느냐는 질문에 87.5%가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응답함
-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되고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원들의 올바른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함.
-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학부모 모두가 신뢰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굳건하게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함.

[마무리발언 : 방한일 /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교권보호 4법 개정과 함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중요함.
- 디지털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에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적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
- 교권보호와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함.

결 과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 개정과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함.
-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함.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집행부와 논의가 필요함.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농어촌학교 소멸 대응 방안 마련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023. 12. 18.(월) 14:00~16:00 / 보령교육지원청 제1회의실
- 참석: 100여명(관계 교사 및 공무원, 전문가, 학부모 등)
- 주제: 농어촌학교 소멸 전후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신청: 편삼범 위원장

I 총 평

-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이자 가속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어촌 학교 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 이에 관련 여러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안과 폐교를 활용한 학령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의정토론회임
 - 토론자들은 농어촌학교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였음
 - 학령인구를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거지원, 일자리 알선 등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냄
 - 소멸위기 학교의 시설 활용을 통한 학령인구 가족 유인 방안과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서혜승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학령인구 유입 방안 마련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및 학교 소멸 대응방안 모색

○ 충청남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현재

1)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① 충남교육청의 기준

- (통폐합기준) 충남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을 학생수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학부모의 60% 이상 동의시 추진함
- (중점관리학교) 총 학생수 30명 이하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통폐합 찬반 조사, 홍보자료 제작 배포
- (분교장 개편) 매해 3.5자 학교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2년간 신입생이 없거나, 2년간 교직원 수가 학생수보다 많은 학교
- 교육과 보호를 포함한 영유아의 초기경험의 중요성, 영유아 발달과 가족의 복지가 강조되고, 일하는 여성의 증가는 교육과 보호의경계를 모호하게 함

2) 적정규모 육성 학교 지원방안

①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지원 기준

구 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국고	자체	계	국고	자체	계
통폐합	분교 통폐합	30억	3억	33억	90억	3억	93억
	분교장 폐지	10억	2억	12억	10억	2억	12억
	분교장 개편	5억	0.3억	5.3억	5억	0.3억	5.3억
신설대체 이전		30억		30억	50억		50억

- (목적) 폐지학교 학생의 상실감 해소 및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 (사용대상) 폐지학교 학구 내 학생과 폐지된 학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통합학교
- (사용범위) 폐지학교 학구 내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 통합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 * 학생의 학습환경조성에 필요한 소요 물품 구입 지원(1인 4백만 원)
- (지원절차) 기금운용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
 - ▶ 도교육청은 적정성 및 합리적 사업규모 등 검토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도의회 심의 의결로써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어 해당 학교로 교부함.

○ 폐교위기 학교, 폐교를 활용한 학령인구 유입정책은 농어촌학교 소멸과 농어촌 인구감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폐교와 지방소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폐교가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라는 지표적 관점(심오섭, 2010)과 폐교가 지방인구 감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구감소 자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결정적 원인(정민석, 2020)이라는 측면도 있음
- 폐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지방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전대경, 2022). 심지어 폐교가 발생하더라도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를 당장은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음
- 국내의 폐교 활용 사례를 보면 그 형태는 교육시설(18%), 소득증대시설(17.3%), 문화시설(5.6%), 복지시설(3%), 체육시설(0.8%)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국내 약 3,700여개의 폐교 가운데 70%가 매각 또는 철거, 30%는 지방교육청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0% 가까이가 방치되고 있음(성이용, 2020). 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폐교재산과 폐교위기에 직면한 학교를 활용하여 학령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안이 요구됨



○ 폐교위기를 막고 학령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유인 방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과 학교의 상생사례를 예로 들면, 마을주민들의 능동적 역할로는 인구 유입촉진책으로 임대주택 제공, 정착주민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일자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 2020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 함양군 소재 서하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택 제공, 일자리 알선, 문화·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 결과 서하초 학생 수는 25명이 증가하였으며 학교 소재 마을로 36명이 이주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음
- 이러한 모델을 통해 2021년부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생활거점사업' 확대로 이어졌음.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라는 인식을 공감한 고성군 삼산면 삼산초등학교도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본격 나섰다
- 고성군은 정주여건, 임대용 빈집 정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지역기업체 취업 알선혜택과 함께 LH가 임대주택 10호, 커뮤니티센터 1동을 확보해 신입생과 전학생 가정에 제공함

2 지정토론(4인)

① 김영아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박사)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과 농어촌 학교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

○ 인구 유입과 농어촌 학교 소멸위기 대응은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가?

- Knapp(1989)는 인구를 지역에서 밀어내는 요인으로 높은 실업률,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안에서의 갈등과 안전에 대한 위협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는 고용의 기회, 높은 임금과 풍부화 교육, 문화, 의료시설, 쾌적한 환경 등이라고 했음
- 학령인구의 지역사회 유입은 첫째,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둘째, 유입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안정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젊은 청년층 가

임기 여성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라 봄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충청남도의 추진방향**

- 단기적으로는 공동학구제의 도입 등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생태학습, 문화예술교육 등을 도입하여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도 있을 것임
- 경상남도의 경우 ‘초등학교 광역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과대·과밀학교 내 거주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중·소규모 학교로 전·입학 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한 형태임. 전라남도의 경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통해 시·읍의 학교가 먼 지역으로 입학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경우 ‘공동통학구역 어울림학교’ 제도를 통해 작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큰 학교와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함
-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서도 ‘공동통학구역’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폐합이 아니라 통폐합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가 소규모학교 지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학교규모에 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권한 확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소멸위기의 농어촌 학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② **임정은 (디지털미디어연합 학생과청소년 주필)**

‘폐교위기 학교, 폐교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 학교운영 방안

○ **폐교 위기 학교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학생 수 포함**

-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과역면에 있는 영주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50~60대 주민들이 입학을 하면서 폐교 위기를 막아내고 있으며, 경북 청송군 현서고등학교 역시 2014년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20~50대 중졸 주민 9명이 입학하면서 폐교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음



- 현재의 문해교실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¹⁾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운영 등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이들 고령 학습자들을 학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어촌 작은학교의 차별화된 지원책 필요

- 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는 ‘폐교위기 대응 및 폐교활용 방안 연구’에 참여하여, 충남형 폐교 활용의 주제를 ‘SUNY(햇볕이 잘 드는)로 ’ 지역사회보장형 S(Save)형, 지역사회 활용형 U(Utilize)형, 거버넌스 협력형 N(Network)형, 폐교위기 대응형 Y(Yet)형’으로 하고 세부모델, 방향성과 운영 및 활용 형태와 세부적인 내용까지 연구하여 제시함
- 지역사회에 맞는 모델을 선정, 상기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에서 제시한 방법, 폐교위기학교와 폐교를 ‘학습공간, 체육활동공간, 체험활동공간’ 등 학교교육 활동에 따른 기능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소멸위기 학교의 관사 및 시설 활용을 통한 학령인구 가족의 유인책 도입

- 지역의 인구 소멸위기 및 폐교위기 학교에 대하여 학교의 주요시설(관사 등)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의 협조를 통한 협력방안과 더불어 시설을 활용하여 학령인구 가족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③ 이해경 (충청남도교육청 행복교육팀장)

충남의 작은학교 지속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소고

○ 지자체와 함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 인구소멸지역은 원천적으로 지역에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읍내지역에서 먼 단위의 작은 학교로 이전할 학생이 없음. 따라서 이제는 타시군에 있는 학생이 우리 지역의 작은 학교에 전학을 오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음.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이사를 와야 하기 때문에 정주 여건과 일자리 그리고 그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활동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음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채택하고 활용하여 기업, 조직, 사회의 업무의 유형 및 일처리 과정과 문화 전반을 혁신하는 과정으로 이는 단순히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 전체의 변화가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정주여건 + 일자리 + 특색교육 = 작은학교의 지속적 성장

- 충남 도내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현황
 - 〈공주-정안초〉 정안초등학교 앞 임대주택 10채 건립,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에 ‘정안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선정, 26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66억 투입 예정
 - 〈금산-남일초, 부리초, 상곡초〉 빈집 공모사업 진행, 인구소멸방지 대책 15채 예산 확보 완료, 추후 100채 예산 확보 예정, 2023년 공모 후 2024년 입주 진행, 2024년 가을 입주, 추후 공립형 대안 중학교 설립 예정
 - 〈서천-마산면〉 행복주택(스쿨빌리지) 임대사업(9채),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을 군청이 매입하여 임대주택 건축
-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 경상남도과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 작은학교 인근 마을을 정주 여건 마련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주민들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을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
 - 2020~2021년 4개교 선정 운영, 63가구 이주, 약 60여명 학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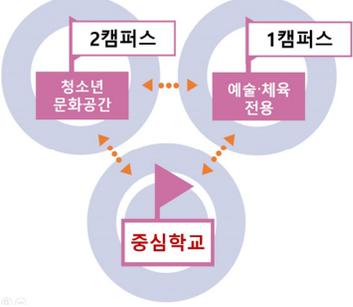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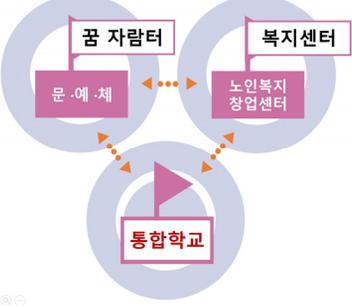
④ **윤병숙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농어촌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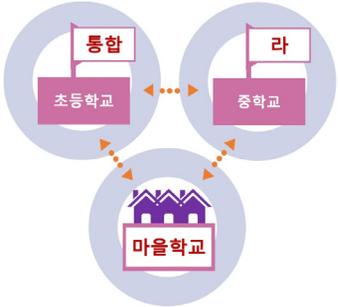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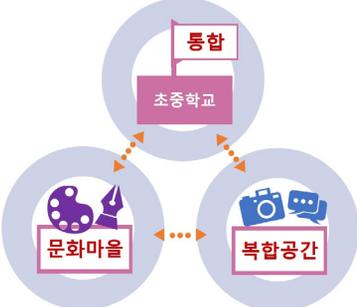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방향**

-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생수 30명 이하의 중점 대상학교에서 학부모의 60% 이상 동의를 얻어 인근학교와 통폐합 후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체험학습을 제공함
-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7가지 모형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두가지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지역에 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함

- 학교복합화형

- 학교 단독형(교과+체육·예술공간)	- 학교+복합(노인복지+청년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체육공간) 야구장, 탁구장, 헬스장, 요가실, 중규모 화실, 악기연습실 등 ▶ (문화공간) 스터디실, 중규모회의실,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작은도서관, 카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창업센터) 노인케어센터, 청년 창업 공간(공유오피스·주방, 스튜디오, 회의실 등) ▶ (꿈자람터) 실내외놀이터, 도서관, 영화실, 영상실, 공연실, 스튜디오 등 학생 창의적 체험 활동 공간

- 지역 자립형

동일급 통합형(학교+공공주택)	통합형(마을 속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학교) 다목적 공용공간(학생과 마을주민의 휴식, 발표, 전시, 모둠학습 등), 학교 밖 수업지원실, 방과후강좌실 등 구축 ▶ (정주여건) 마을의 빈집 리모델링, 장기 임대, LH 주거 플랫폼 사업 유치 등 마을 자치회 주관 지자체 공모사업 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화 공간) 학교 내 문화, 체육, 복지, 평생교육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중심터 형성 ▶ (문화마을) 학교 내 유휴시설과 미활용 관사 리모델링(교직원 정주 여건 조성), 마을예술 창작소, 전시관, 소극장, 커뮤니티 공간 등 구축

- 지역자립형에서 제시하는 학교의 미활용 관사 제공이나, 유휴 건물의 복합화 공간 제공은 현재 공유재산법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고려해야할 방안임
- 학교의 미활용 관사를 외지 학부모가 정주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게 한다 면 소멸지역 인구 유입의 장벽을 낮출 수 있음. 다만 미활용 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지역의 빈집 리모델링, 장기 임대 등 지역, 지자체, 학교가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함

3 종합토론

의견

토론자들의 대안을 살펴보니 교육정보다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방이 필요한 것들이 보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음

【윤희신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견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행정이 우선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교육쪽이 뒤를 따르는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따라서 지자체-지역사회-교육청 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겠음

【편삼범 충청남도의회 의원】

질문

적정규모 학교 관련 학부모에 대한 소통의 계획이 있는지?

【채지은 오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답변

올해 설명은 이미 실시했음. 추후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때 관련 학교를 찾아가서 대상 지역 학부모, 지역주민께 설명드리겠음

【이혜경 보령교육지원청 행정팀장】



Ⅲ 토론회 결론

1. 농어촌학교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학령인구 유입에 효과성 있는 유인정책이 필수라는 점에는 토론자 모두 공감함.
2. 특히 가임기 여성 정착에 대한 일자리, 거주 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3. 또한, 폐교 위기 학교에 대한 고령층 등 성인학습자를 포함한 교육방안도 제시함
4. 폐교위기 학교 시설 및 지역 빈집을 활용한 학령인구 거주지원을 통한 소멸 대응 방안도 제시함
5. 무엇보다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함

Ⅳ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교육혁신과 등)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023. 12. 21.(목) 14:00~16:10 / 서천문화원 강당(2층)
- 참석: 50여명(관계 교원 및 공무원, 전문가, 학부모 등)
- 주제: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 신청: 전익현 의원

I 총 평

-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의정토론회임.
 - 토론자들은 청소년 약물중독 실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들을 치료·상담하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학교 위클래스, 거점 위센터, 중독재활치료센터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에 한목소리를 냄.
 - 또한, 마약류의 약물은 한 번만 사용해도 뇌가 중독되어,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따라서 각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함께 빠른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결론적으로 학교 위클래스, 거점 위센터, 중독재활치료센터가 구축되어 관련 전문기관 간 협력 체계가 반드시 필요함.
-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①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및 상담 개입 방안

○ 청소년 약물중독의 심각성

- SNS 메신저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던지기, 다크 넷, 암호화폐 등 마약류 거래 수단 다양화, 신종 저가 마약의 등장,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 등은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쉽게 만들고 있음
- 2012년 마약류 사범 중 19세 이하 비율이 0.4%(38명)에서 2021년에는 1.8%(450명), 2022년에는 2.6%(481명)로 증가됨

○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 ① 청소년 약물중독에 특화된 거점 센터 및 상담사를 배치하여, 각 학교 및 청소년 시설에서 약물중독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
 - ②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조례 개정
 - 충청남도 중독관련 조례 : <충청남도청소년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법률 제 5272호, 시행:2022.10.18.)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에 노력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법률 제 6217호, 시행: 2019. 6.18)
- ⇒ 청소년의 약물중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점 기관 및 전문가를 배치하여 예방 사업 및 치유,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

③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 방안

- 1차 예방 주체인 학교의 기능 강화

-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모듈식으로 구성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 내에 약물중독 예방 내용 확대
- 전 교직원의 약물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 잠재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학기초의 약물중독 선별검사 실시 및 연계 (wee-class의 기능강화)
- Wee-class 상담사의 중독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확대

- 교사용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과 교사직무연수 확대

-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SBIRT-IAD (Screening, Brief Intervention, Referral, Treatment - Internet Addiction Disorder) 적용한 표준화된 매뉴얼 적용
- 직무연수 및 교육: 현장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및 교육의 기회 제공

- 부모, 교사, 전문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약물중독은 복합적 원인으로 촉발됨
- 부모와 교사, 전문가들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부모 협의체 구성: 배움, 상담 치유, 사회기반, 소통 참여를 기반으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④ 약물중독 치료 방안

- 잠재위험군 및 고위험군을 위한 치료지원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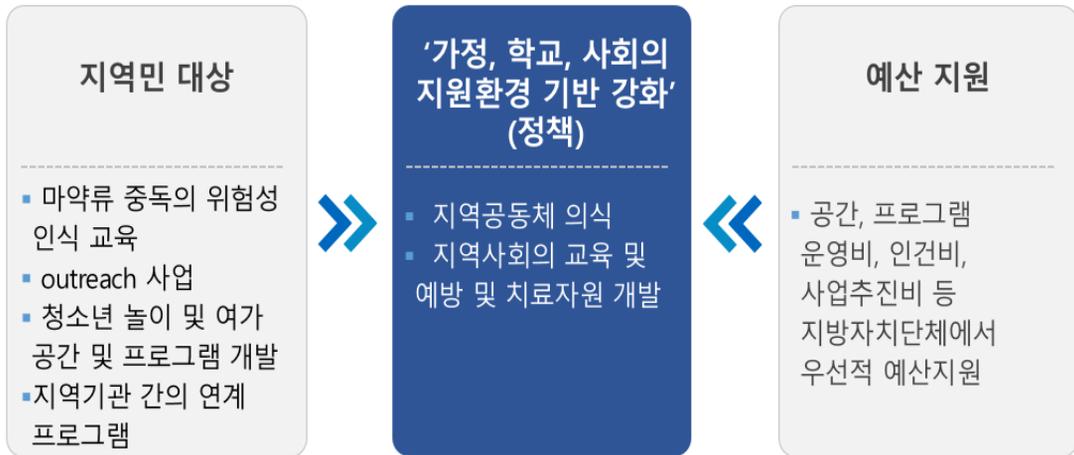
- 중독 전문상담 인력 확대: 잠재위험군과 고위험군 치료를 위한 전문 상담사 확대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 고위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심리지원: 획일적인 치료 및 프로그램이 아닌 고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청소년 약물중독 전문치료 시설확대 (병원 및 거주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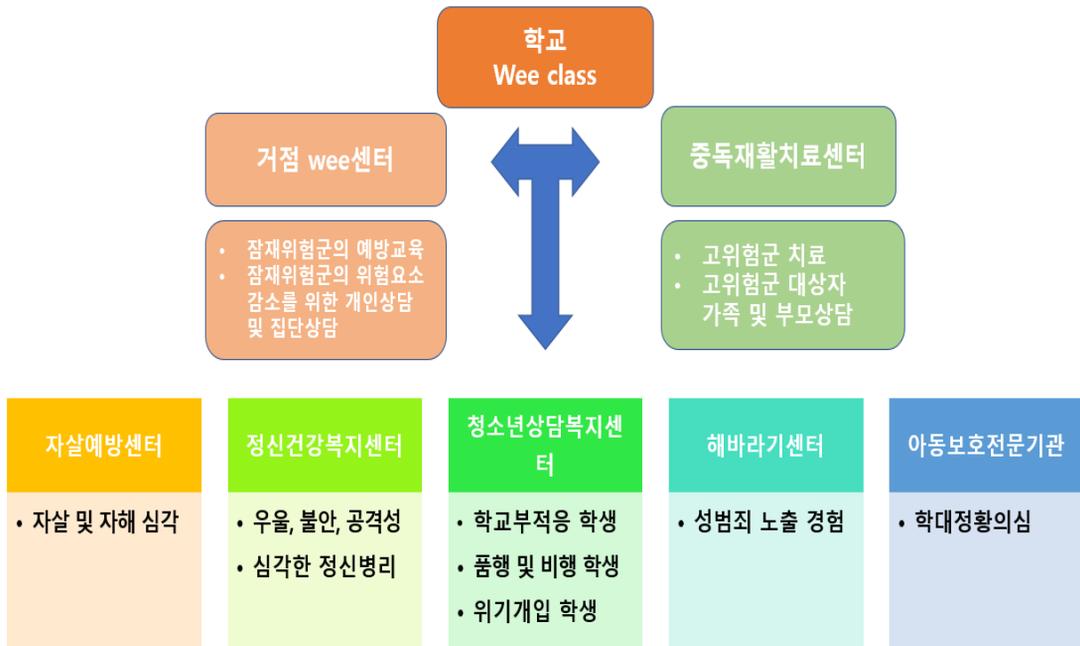
- 중독치료 프로그램: 입원치료, 통원치료, 해독치료
- 정신건강서비스: 자살,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다룸, 외로움/소외감, 상실, 트라우마 등의 문제 다룸
- 가족과 형제·자매 프로그램
- 재활 및 심리지원: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능력 향상, 문제해결력 향상, 진로 및 진학 상담

-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 협력 방안

- 지역 협력체 구성 및 연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 Wee class 주축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정토론(5인)

①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팀 과장)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현황 및 예방

- 국내 마약류 중독의 동향과 청소년 마약류 사용의 현황
 - 국내 마약류 사범의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마약류 사범의 초범의 증가와 저연령화 둘째, 비대면 거래의 증가 셋째, 의료용 마약류 문제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스마트폰 사용이 용이한 청소년들이 SNS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들의 접근이 쉬워지고, 그에 따른 구입장벽이 낮아졌음. 또한 저렴한 마약류 가격과 국제 우편, 특송화물을 통해 구매 경로도 다양해졌음
 - 2023년 복지부에서 실시한 만 14세 이상 만 24세 이하 일반 청소년 1,83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마약류 온라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3명(1.3%),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번이라도 약물을 의사의 처방없이 또는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는 107명(5.8%)로 마약류 사용 또는 약물을 의사 처방없이(또는 처방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18명(6.4%)였음
- 청소년마약류 사용의 예방
 - 전문 마약류 강사가 학교에 나가서 마약류 교육을 하는 것은 전국 학생수의 5%가 채 안되고, 국가에서 책정한 마약류 전문 예방교육예산은 그보다 적음. 또한 마약류 취약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다문화 및 탈북가정 청소년은 그 기회조차 없음
 -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내년부터 전국 유아, 초·중·고교생 대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수혜율을 대폭 확대 추진계획임. ('23년 5% → '24년 33.4%) 단계적으로는 일년에 최소 한번은 전문적 마약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제언
 - 첫째, 각 학령별에 맞는 표준화된 교육교재와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함. 유아부터 고등까지 각 학령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 교재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둘째, 다각적 접근의 마약류 예방교육이 필요함. 청소년의 마약문제는 생리적,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안전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
- 교육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함. 현장에서 만난 마약류 사용청 소년의 보호자 및 교사, 지역사회 성인 대부분도 마약류에 대한 인식 위험성이 높지 않았음
-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one-stop system을 구축하여 예방-선별-재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② 맹혜영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장)

약물중독의 치료방안에 관하여(중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 증상에 따른 개입

- 단기 개입 프로그램(1박 2일)의 활성화 :현재 중앙(서울) 중독재활 센터에서 진행 중임
- 상담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실시
 -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치료프로그램: 고위기 상황 인식 및 대처방법 훈련프로그램(딜레마 존),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대인관계 훈련), 직업 탐색프로그램(꿈을 찾아 dream) 외에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이 있음

○ 마약류 문제 청소년 발굴

- 충청권 지역의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방문)의 확대화 : 기존 2곳 기관(대성여중, 파랑새휴먼지역아동센터)실시하였고, 내년도 계획에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많은 횟수로 계획하고 있음. 또한, 효광원(보호처분 6호 소년원생들 거주)에 찾아가는 집단상담이 계획되어 있음

○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

- 현재, 시범사업으로 마약류 문제 24시간 콜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상담의 확대화 및 현재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범운영을 법제화하여 검찰, 복지부, 식약처, 법무부, 한국마퇴 재활센터가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중독자를 치료 세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맺는 말

-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확인하는 즉시 치료병원이나 중독재활센터에 보내 적절하게 치

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으면서 회복의 길로 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 범죄자라는 낙인과 편견으로 마약을 사용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마약류보다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삶과 문화가 형성되어 마약류에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기 않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함

③ 전희진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약물중독의 예방 정책 방안(학교에서의 예방교육 중심으로)

○ 2023년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 현황

-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보건교육, 안전교육, 담임시간,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추진함. 특히 2023년도에는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이 개정되어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로 명시화된 것이 2023년 10월이기 때문에 2024년도가 되어야 관련 시간이 교육과정에 명확히 적용될 것으로 보임
- 교육 실시자 측면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대상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을 위하여 모든 학교 담당교사 연수를 4월에 실시하였음
- 학교 내의 교원이 예방교육을 실시했을 때 가장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교육 실시자 대상 연수가 부족하여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도 동반되어야 함

○ 학교에서의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 관련교과 연계 약물중독 예방교육
 - 약물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모든 교과 및 교육활동에서 약물의 안전한 사용, 약물 중독의 위험성 및 피해, 긍정적 지원체계 등에 관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원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연수가 일반과정, 심화과정으로 진행되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기 학생 상담 강화
 - 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의 전문가 강의에 따르면 학생들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



용을 하는 이유는 호기심, 권유, 돈 등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정서·심리적인 결핍에 기인한다고 함.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 강화가 절실함

- 전문기관 협력 및 통합 지원 부서 마련
- 마약류 등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 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전문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전문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 담당자의 역량 강화,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식 제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치료 연계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④ 허난설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낙상사고로 불참

청소년 및 청년기 약물 중독 예방 및 개입 정책에 대한 제언

○ 마약류 관리 및 감시 제도의 보완

-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사후 보고 방식으로 인해, 한 사람이 하루에 마약류 의약품 10개 종류 4763정을 처방받은 사례 등도 지속 보고 되는 등(청년의사, 2023.10.11.),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음
- 또한, 마약 신고 포상제는 관세청에서 실제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를 신고하는 제한적인 범위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불법 마약의 유통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확대하여 SNS 상의 마약류 의약품 유통 의심 광고나, 약국에서 지나치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의심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부서간 협력을 통한 위기 청소년 심리상담 기관 운영 문제 개선

- 학생과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가장 핵심 기관인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부 산하 위센터 및 위클래스도 운영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음. 먼저, 교육부 산하 고위기 청소년을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교육청 단위 위센터의 경우, 1) 저경력 전문상담교사의 신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1-2년 단위의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 이후 위클래스로 전근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고위기 아동 및 청소년 상담에 대한 노하우를 개발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함. 또한, 2) 지역 교육청 소속 학교상담자 대상 사업 및 소규모 학교 순회 상담 업무 등을 병행하기 때문에 고위기 청소년 개인상담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근본적으로 3)고경력 또는 고역량 전문 상담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인사 정책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이 활발히 운영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조건임

- 병원형 위센터 역시 그 시작에서부터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수익 보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장애 요인들도 보고되어 있음(김효선, 배희분, 장덕호, 2019). 이에 충남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병원형 위센터의 개소보다는 자문의 연계나 학교방문 사업이나 연계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이 주로 실시되고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9세부터 24세 대상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의 경우, 위클래스와 위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모두에서 개인상담 의뢰를 받아 안정적으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인상담을 제공하는 있는 기관임에도 1)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주체가 되는 정책적 개선 움직임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또한, 2) 민간 재단에 위탁 운영 되는 경우, 위탁된 재단에 따라 운영의 불안정성이나 불합리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들은 3) 지자체에서 성과 위주로 예산을 부여하는 재정 구조로 인해 무한정 늘어나는 프로젝트성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4) 저조한 임금 및 처우 문제로 인해 평균 근속년수가 3년 이하로 보고될 만큼 매우 짧음
- 종합적으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산하 고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기관인 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각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책적 과제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고려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⑤ 김숙희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중독상담의 현장 적용 방안

- 최근에 상담했던 학생들 중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불면증이 오거나 공황 증상으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공부시간 부족으로 장시간 깨어있기 위해 카페인을 복용하는 경우 그 용량이 과다해서 불안증세를 겪는 경우도 있었음. 중독은 이처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함
- 중독상담을 위한 학교 상담실 실태와 활성화 방안

■ 학교급별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2023.3.1.기준)

구 분	학교수	Wee클래스 구축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교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합계
초등학교	79	52	24 (정원외3포함)	17	41
중 학교	31	30	17 (정원외1포함)	13	30
고등학교	22	22	18 (정원외1포함)	4	22
특수학교	3	3	2	-	2
대안학교	2	1	-	-	-
합 계	137	108	61	34	95

- 중독은 다른 문제 유형과 달리 잘 드러나지 않음. 게다가 비자발적으로 부모나 교사가 데리고 왔을 때에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중독을 끊는 과정은 참으로 지치기 쉽고 지난한 과정이며,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상담실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 중독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에 상담교사가 미배치 된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밀착되고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하루빨리 한 학교당 적어도 1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중독문제 뿐만 아니라 정서나 행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다양한 치료기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활용

- 전국에는 다양한 중독 관련 지원센터들이 있고, 이런 센터에서는 중독 예방, 치료,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위기학생 치료지원사업으로 차오름센터, 고위기상담위탁기관(맑은마음상담센터),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병원 2곳) 등을 운영 중에 있고, 또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를 두고 있음

■ 위기학생 학생 치료지원 운영 (충청남도교육청 상담활동 기본계획)

기관	내 용
차오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학생 긴급 위기 개입 ◦ 기숙형 집중 치유프로그램 운영 ◦ 위기학생 중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 안정이 필요한 학생 의뢰
고위기 상담위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기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치유지원 ◦ 집단 상담, 교사 자문, 학교 컨설팅 운영 ◦ 위기사안 발생 시 자문 및 위기지원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전문가 심층평가 위기개입 ◦ 학부모 상담 및 교사 자문 ◦ 학생 맞춤형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마음건강 자문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응 및 고위기 사례 상담 자문 ◦ 도내 정신건강전문가 위촉 치료지원 ◦ 교사 및 학부모 상담자문 및 교육

3 종합토론

의견

제대로 약물중독을 예방하고 치료·상담 체계를 마련하려면 초기부터 방향설정이 중요함. 현재 일선 상담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약물중독과 관련된 상담까지 한다면 그 내실이 허약해질 수 있음. 도입때부터 보건교사와의 분업화,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함

【OOO 아산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



의견

상담교사의 배치 부족으로 일선 현장에서 업무량은 많아지고 힘든 상황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치우 개선을 발언한 바가 있음. 지속적으로 도 교육청에 건의하겠음. 또한 약물중독 예방교육과 상담 등을 분업화, 체계화하여 전문기관과의 연계성 신장에도 노력하겠음

【전익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결론

1. 토론자들은 청소년 약물중독 실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교육부터 치료·상담 개입까지 전문적인 접근 필요성에 공감함
2.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실시 교원의 전문성 강화도 함께 필요함
3. 또한 치료·상담 개입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전문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4. 결론적으로 학교 위클래스-거점 위센터-중독재활치료센터가 주축이 되고 관련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즉시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체육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등)

청년 스마트팜, 충남 농업을 말하다

- ❖ 한국 농업구조 개선을 주도할 스마트농업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 점검
 - ❖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확대 보급 및 ICT, 빅데이터 등 최신 스마트팜 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 방안 모색
- ⇒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충남 스마트팜과 충남 농업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함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3. 12. 27.(수), 14:00~17:00 / 서산문화원 강당(3층)
- 참석 : 50여 명(의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주제 : 청년 스마트팜, 충남 농업을 말하다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도민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충남 농업과 청년 스마트팜이 나아가야 할 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기후위기 속에 농업 현실과 청년 농업인구 유입과 스마트팜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바를 점검하고
 - 특히, 기조강연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농업의 가치와 디지털 혁신으로 재탄생한 K 스마트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 주제발표 및 실제 청년 농업인의 생생한 사례발표를 통해 현재 청년 농업인이 겪고 있



- 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또한, 그간 충남 스마트팜이 시설원예에 치중했다면 다양한 유통망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창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적인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1 기초강연: 민승규 세종대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석좌교수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곡물 수입 의존도가 80%나 되는 곡물자급률 하위권으로 식량안보 대응 및 의존이 취약한 상황임. 또한, 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실제 농업기술의 혁신은 신기술로 해외에서도 유망한 산업으로 인정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 속에 국내 농업은 급격한 쇠퇴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더 이상 농업은 농민만을 위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에 직결된 산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
- 농업의 본질은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농가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약 948만원으로 전년대비 26.8%가 감소한 수치로 농업을 통한 수익창출은 부진함
- 더욱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위기와 식량안보가 다시금 대두된 것처럼 국제관계의 변화가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변화 역시 식량생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에 농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임
- 농업의 혁신은 스마트팜 또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이 합쳐진 에그테크(AgTech)로도 정의되고 있음
- 스마트팜은 단순 시설이 아닌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농업용로봇,

- 드론, 5G가 포함된 4차 산업혁명 의 핵심기술로 우리나라에서는 시설농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품 유통에서도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등을 도입하여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별 농업 가치사슬의 비교 우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업 데이터의 표준화와 스마트농업 관련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집중해야 함

2 주제발표: 이인규 글로벌스마트팜 연구소 대표

- 스마트팜은 저출생·고령화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변화에 가장 적합하나, 이를 위해서 최첨단 ICT가 도입된 시설투자와 데이터 분석이 기본이 되어야 함
- 현재 국내 스마트팜은 시설투자로 인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네덜란드 스마트팜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농업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실제로 각 나라별 토질과 기후, 수분량에 따라 다른 모델로 품종을 선별하고 수분량을 측정하여 작물을 선별하는 것이 스마트팜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딸기수요가 급증하며 한국산 딸기를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음)
- 수자원 고갈 및 기후위기, 수경재배로의 급격한 전환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를 따라잡지 못했고 결국 스마트팜의 핵심은 정밀 양액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임
-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솔루션과 에너지 저감형 탄소중립 에너지저감형 스마트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함

3 사례발표: 홍민정 (주)키움, 서유채농장 대표

-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양어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의 합성어로 물고기 양식을 하며 동시에 수경채소를 키울 수 있는 기술이며, 우리 미래 농업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음



- 2014년부터 태안에서 영농창업을 하며 실제 농업을 학도 있는 청년농업인으로서 스마트팜이야말로 해양오염과 토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가장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특히, 아쿠아포닉스는 물 절약과 저탄소에 탁월한 농법으로 실제 토경재배, 수경(양액)재배 대비하여 약 90%이상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배출 감축에 적합함
- 실제로 물이 부족한 사막국가에서도 주목할 만큼 탁월한 물 재활용률(99%)을 보이고 있으며 탄소중립특별도를 선포한 충남도에 적합한 충남형 저탄소 농업이라고 생각함
- 앞으로는 인기가 좋은 어종인 연어, 장어, 동자개(빠가사리)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적용한 적극적인 아쿠아포닉스 연구를 통해 저탄소농업의 선두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해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지정토론(4인)

① 장인동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장)

- 민선 8기 농촌구조 및 농업시스템 개선 일환으로 충남형 스마트 농업 육성 단계별 점진적 확대에 필요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3축모델(경영실습형, 창업준비형, 창업자립형)을 정립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수료, 도제실습, 부지제공을 통한 스마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 스마트팜 시공지원을 위해 충남형 모델정립 및 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금융지원 및 경영설계 및 유통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시군자체 사업용 토지 미확보 문제로 자체재정으로 한계가 있어 이를 농식품부 지침개정 및 기재부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공유재산관리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 중임
- 더불어 스마트팜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적극 알리고 현장중심 정책 실행 등 성과중심 기반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② 이진영(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장)

- 식량수요 증가에 반하는 농업생산 기반 위협과 농업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인해 스마트농업이 농업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부각되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충남형 스마트농업은 농업·농촌 구조 및 시스템 혁신을 통해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을 통한 역량있는 청년농 유입 및 정착도모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 충남 농업기술원 또한 스마트농업 핵심인력 3,000명 양성을 비전으로 청년 창업교육과 기술지도 전문가 양성, 스마트팜 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 적용 작목 기술개발 등을 추진중에 있음
- 스마트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 스마트팜 실습 교육장 및 스마트팜 사관학교(경영실습교육장)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창업 경영교육을 위해 청년 창업교육,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미래세대 기존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확산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 농업관련 공무원 기초교육, 스마트농업 기술지도 전문가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스마트팜 작목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향상 모델 개발, 스마트팜 적용작목 기술개발 및 보급, 충남 스마트팜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스마트팜 R&D 인프라 특화작목 중심 스마트 온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 추후 충남 스마트팜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팜 R&D 인프라 특화작목 중심 스마트 온실 구축 등을 통해 작목별 최적 환경 분석 및 경영 모델 개발 경영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임

③ 박두웅(내포시대 국장)

- 스마트팜 농업의 비전과 농업정책은 민선 8기 충남 도정의 주요과제로 김태흠지사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으며, 충남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음
- 실제로도 세계 스마트팜 시장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146억달러에서 2026년에는 2배 이상 성장한 341억달러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팜 시장 규모 역시 2017년 4조 4,493억에서 2022년 5조 9,588억 규모로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스마트팜 성공을 위해 농업의 주요 요소인 ‘자금’, ‘인력’, ‘기술’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충남도의 정책 수립 시 이 세가지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이에, 산·학·연·관의 협력 시스템을 통한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일정수준의 농가소득 확보를 위한 농작물 판로확보, 스마트팜 농업의 핵심인 생육데이터 구축, 농업가치 사슬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통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④ 김동원(충청남도 4-H 연합회 회장)

- 충남의 스마트팜의 수도를 내세우며 실제로도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충남의 농업 방향에 대한 우려도 많음
- 충남도의 스마트팜 지원은 대부분이 시설원예에 치중한 사업이 대부분이기에 실제 현장에서는 노지 스마트팜도 가능하도록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함
- 또한, 교육에 참여한 청년창업 교육생들이 졸업 후 실제 농업에 투입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이 부족하며, 각 시군의 임대형 스마트팜 역시 대부분 간척지나 바다에 인접되어 있어 시설 기초공사나 수질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스마트팜 재배 작물 역시 일부 농산물에 한정되어 있어, 스마트팜 확충으로 인한 과다생산이 농작물의 가격붕괴 및 매출저하로 이어져 높은 생산원가에 비해 농가소득은 저조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농작물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 홍보,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임

5 청중토론

- 실제 청년창업농인 홍민정 대표의 서유채 농장에서는 생산된 농산물 판매 대금으로 시설 투자비용 마련이 가능했는지 질의하며, 스마트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투자를 통한 적정한 수익창출이 가능한지와 관련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청중1- 고북면)
- 농업인의 경우 농작물 해외수출 기회가 있더라도 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문제를 지원하고 꾸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마련을 요청함 (청중2- 고북면)

- 앞서 토론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팜 부지 확대로 특정 농산물이 과다생산되면 매출부진과 가격붕괴가 발생되기에 현장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보다는 경쟁자 구도로 기존 농업인의 경우 소외감과 박탈감도 느끼는 경우가 많기에 유통지원과 농산물 가격결정에 대한 주도적 지위 보장이 필요함 (청중3-태안군)

6 정리발언

- 이번 토론회는 우리 충남의 청년 스마트팜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고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전방향 정립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올바른 스마트팜 정책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음
-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충남의 스마트농업 발전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

Ⅲ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성공적인 충남형 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투자과 청년농 유입 정책은 물론 IoT, 빅데이터, 첨단 IC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농업 혁신이 필요함
2. 또한, 토질, 기후, 수분량, 품종 등에 따른 생육데이터를 추적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함
3.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도입 및 스마트팜 R&D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농업 가치사슬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결 과

- 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맞서 성공적인 충남형 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인, 전문연구기간, 도·시군 및 충남도의회는 물론 유통관련 산업계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과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 청년 창업농과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농업 확대 보급
 - 도내 스마트팜 임대 부지 및 시설 보급
 -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농가보급
 - 스마트팜 생산 품목 다양화, 유통망 지원
 - 스마트팜 관련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
IV
—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염종현 의장,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 참석 “도민 교통서비스 안정성 높일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024년 첫 도입된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경기도민 교통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지렛대가 돼야 한다”며 철저한 시행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 새로이 도입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이전 준공영제보다 투명성과 공공성이 진일보한 경기도형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열악했던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잦은 노선 폐지와 파업 위기로 불안했던 도민 교통서비스에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장은 그러면서 “공공관리제 도입은 경기도는 도민에게 가장 기본적 교통수단인 버스를 더 안정적으로,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결과물”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에 뜻을 모아 공공관리제의 출발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어 “이번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가 진정 모든 도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관리제의 성공적 시행과 도민 교통편의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김종배(더민주·시흥4) 건설교통위원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인 조용익 부천시장,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이기천 의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김기성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경기도가 버스 운영 수익을 일정 기준에 따라 버스 업체에 분배해 공적관리 기능을 높인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 2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6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도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협업성과 ‘톡톡’

- 2023년 자치법규 개선과제 12건 개선 및 중앙부처 건의과제 3건 수용 -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지원과 투자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구성·운영한 “도의회·도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T/F)”이 협업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한 해, 지방규제혁신 공동 T/F팀은 “제주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협업을 추진했다.
 - 총 31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중앙부처 건의과제(19건)는 해당부처에 제출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도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12건)는 해당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 이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규제개선과제 12건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이 완료되어 △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 저소득층 대출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포용 지원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 또한 중앙부처 건의과제 19건은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부처에 모두 건의했으며, △중앙급전기기저장장치 설치에 대한 기본지원금 산정기준 마련,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감축 등 3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가 수용하여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 향후, 지방규제혁신 공동 T/F팀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이거나,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리 보완 및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경학 의장은 “의회 제안으로 어렵게 출발한 도와의 규제혁신 TF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낸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제주의 투자환경 개선 및 민생안정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규제혁신은 기업 발전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라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지속가능한 빛나는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제주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는 등 지방규제혁신 공동 T/F팀 운영 등을 통한 중앙 및 지방규제 건의·개선 노력,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 노력 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인천시의회, 직업계고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발전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직업계고 활성화 토론회 개최

인천지역 내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와 지역사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17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위원회 임춘원(국·남동1)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는 “직업계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대입 경쟁의 트랙을 벗어날 수 있는 매력적인 길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의 입시 경쟁 트랙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평자동차고 이재란 교장, 인천시교육청 정민영 장학사, 인천디자인고 박윤선 교사, 인천해양과학고 학부모 강진숙(여) 씨, 인천주니어클럽 오승한 회장, 인천금융고 전준희 양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란 교장은 “우리 사회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과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직업계고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희 양은 “우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 있다”며 “미래의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직업계고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무엇보다 과거 직업계고의 인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미래 산업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은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좌장을 맡은 임춘원 의원은 “그동안 직업계고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했음에 공감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인천시 직업계고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V
—

최근 제·개정 법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 2023. 12. 28.] [법률 제19120호, 2022. 12. 2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농림어업 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질적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이란 지역의 농림어업 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 조직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민간 운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 중 제8조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
 -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마.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
- 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
-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민간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측정·평가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 간에 지역농림어

업 발전사업 실시 결과 평가에 따른 성과보상 조건과 내용에 대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의 체결 · 변경 ·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의 경제 · 사회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
3. 지역농림어업인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4.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창출되는 성과이익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보다 큰 사업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확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한다.

1.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 ·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



회의 제안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제안
 3. 지역 여론조사·민원분석 및 연구용역을 통한 자체적 개발
 4. 그 밖에 지역농림어업 협의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의 제안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한 경우에는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효율성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추진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확정된 사업추진계획을 고시 또는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타당성 심의 및 민간 운영기관 지정)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수행하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 운영기관으로서의 사업 운영 역량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와 사업 운영 역량을 심의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 운영기관을 지정한다.
- ⑤ 실시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및 기간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목표
 3.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4. 사업비의 조달 방법 및 산출내역
 5.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운영기관 간 사업비 분담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급액 및 지급시기
 6. 성과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
 7.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기관(민간 운영기관과 계약을 맺고 지역농림어업발전 성과보상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대한 위탁 및 관리계획

8. 협약의 해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⑥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서의 승인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간 운영기관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민간 운영기관이 기간연장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서가 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계획서가 실시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시계획서의 보완을 민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⑧ 실시계획서의 작성방법 · 제출연장 · 보완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및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 운영기관과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운영기관으로 선정 · 지정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3. 민간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 이행을 저해하는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이행 조건의 위반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측정 ·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 측정 · 평가기관(이하 “평가



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 ② 평가기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 보고서를 심의한 후 성과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연도에도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을 지속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자격,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한 민간 운영기관에 제8조제5항의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민간 운영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중 성과가 높은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 운영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9120호, 2022. 12.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80호, 2023. 12. 29.,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을 마련하고,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을 변경하고, 대물변제·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을 변경하며,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 변경(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종전에는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가인정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시가인정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임.
- 나.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 변경(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종전에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합리성을 높임.

- 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 마련(제100조의13제3항 및 제100조의25제4항 신설)

내국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함.

- 라.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구체화(제100조의31 신설)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손익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인이 출자한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과 본인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로 정함.

- 마.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확대(제103조의2 전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까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까지 인정하도록 하여 빈집 철거에 대한 정책 유인을 강화함.

- 바.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적용 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빈집 멸실 후 건축 중으로 보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철거 빈집의 세액 상한 적용을 위한 계산 비율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로 인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 사.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 확대(제125조제2항 후단)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전년도 1월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모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에 납부한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개 정 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80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절차에 따라"를 "절차에 따라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시가표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치"를 "위치, 종류"로,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을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을 각각 "시가인정액보다 적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60일"을 각각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의 제목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장 등"을 "골프장 등"으로, "별장·골프장"을 "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2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천500



만원 이내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제34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장·골프장"을 "골프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8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23제4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0조의18제7항제2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0조의3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제103조의2 전단 중 "6개월"을 "6개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빈집이 철거된 경우에는 3년"로 한다.

제111조제3호 단서 중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을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8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인 경우에는 다음 1) 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begin{aligned} & \text{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times (130/100)^n \\ & n = (\text{과세 연도} - \text{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end{aligned}$$

-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경우

$$\begin{aligned} & \text{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times (105/100)^n \\ & n = (\text{과세 연도} - \text{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end{aligned}$$

제12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별표 1 제1종 제2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이상인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유동물의 종이 200종 이상인 수족관만 해당한다.

별표 1 제2종에 제188호 및 제18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8.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1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별표 1 제2종 제1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다만,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동물원으로서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한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이상 200종 미만인 수족관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종 제90호 중 "등록"을 "등록 및 신고(신고의 경우에는 선용품공급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2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다만,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동물원으로서 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을 보유하지 않은 동물원과 수조 바닥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보유동물의 종이 70종 미만인 수족관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가액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해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물변제 및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상취득 등으로 보지 않는 계약해제 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무상취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호 나목6) 외의 개정사항만 해당한다] 은 이 영 시행 이후 멸실시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약칭: 바이오가스법)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2. “바이오가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바이오가스 이용”이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 열 공급 또는 기체연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민간의무생산자: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

②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2.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중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을 제외한 양

③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유기성 폐



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④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과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5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6조(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1.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 2. 해당 공공의무생산자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 3. 해당 공공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공공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양
- ② 공공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6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7조(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①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는 다음 각 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1. 해당 민간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 2. 해당 민간의무생산자로부터 발생한 유기성 폐자원을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3. 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 ②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8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공사에 착공한 경우
 2. 유기성 폐자원의 물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비율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 ④ 과징금의 산정 · 감면 기준, 납부 시기 ·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⑦ 과징금과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 ⑨ 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제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9조(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산정·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산정·작성 및 보고, 제2항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2.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3.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
 4.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현황
- ②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운반·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운반·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운반·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이외의 에너지 작물 등을 유기성 폐자원과 병합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가스 운반·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 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 주민의 참여)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사업자는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주민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2.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4.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의 지원·관리
 5.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등 지원
 6.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7. 바이오가스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 인력 · 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 징수 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부칙 <제1915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재난관리자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을 말한다.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 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공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난관리자원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재난관리자원의 판매, 대여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 6. “공급망관리”란 재난관리자원 또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가 공급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처리·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7. “공급망관리체계”란 효율적인 공급망관리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 8. “재난관리물류”란 재난관리자원이 공급업자로부터 생산·조달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 및 하역(荷役) 등 과 이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 9. “재난관리물류체계”란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 10.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행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제6조(공급망관리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공급망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공급망관리정보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공급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업자단체

제8조(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① 제7조에 따라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한 자는 조사 결과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업자는 공급망관리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판매·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임대하려는 공급업자

2. 관리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공급업자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2. 기술 개발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 폐업·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

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관할구역에 있는 공급업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할구역 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④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아닌 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⑤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2. 기술 개발
3. 공급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폐업·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급업자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수출금지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 안전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재난관리자원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6조(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에 그 지정에 따른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

을 나타내는 표시를 운송수단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⑤ 그 밖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
 2.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과의 연계
 3.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
 4.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의 구축 및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폐업·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물류기업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20조(자원관리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이

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 ④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출납관) ① 자원관리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出納)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 ④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자원이용관) ①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 또는 활용하게 하거나 사용 또는 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재난관리자원의 사용·활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자원의 사용·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등을 자원이용관이라 한다.
- ③ 재난관리자원의 사용·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 ④ 자원이용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사용·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은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 ①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종류·대상·주기 및 그 밖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제25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기능별·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소속 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 소속 분류의 전환 및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의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법인(이하 “소속·산하기관등”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재난관리물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급망관리 등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장관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산하기관등: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시·도: 행정안전부장관
4.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시·도지사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산하기관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서식(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입출력 자료서식을 말한다)에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

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
 2. 내용연수(耐用年數)
 3. 재고관리기준(在庫管理基準)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 ② 관리기관의 장은 비축관리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축관리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자원관리관은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축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비축관리기준을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하고, 재물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의 특별재물조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및 소속·산하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에 한정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增減)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자원관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보관 및 사용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등) ① 자원관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에 정하여진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 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긴급한 대비·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취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물품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등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등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자원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같은 품명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 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재난관리물품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재난관리물품을 관리전환받아야 한다.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및 출납의 원칙) 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재난관리물품의 사용이나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물류시설 또는 물류창고
 4. 그 밖에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창고
- ②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자원출납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자원출납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재난관리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 ④ 자원출납관은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 등에 보관 중인 재난관리물품(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재난관리물품은 제외한다) 중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자원관리관은 제4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등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등에게 그 수선이나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보관·출납 및 수선이나 개조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및 반납) ① 자원관리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자원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원운용관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원운용관은 사용 중인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이 있으면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자원관리관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난관리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자원운용관에게 그 재난관리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및 대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관리기관의 장이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물품은 대부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물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 등) ①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 중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난관리물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포함한다)이 있으면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는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매각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불용 결정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① 재난관리물품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관리물품 또는 불용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8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수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제39조(불용품의 양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를 위하여 일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난관리물품은 일반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40조(망실·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毀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재난관리물품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41조(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재산에 관하여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원칙) ① 재난관리인력은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과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하여 재난관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은 관리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제43조(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재난관리인력에 관하여 그가 소속한 기관·단체·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제44조(시·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한 같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그 통합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재난관리물품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비축시설에 보관된 재난관리물품을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산하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정보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3.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현황
 4.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현황
 5.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에 관한 정보
 6. 전문교육 대상자 및 수료 현황
 7.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8.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9.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10.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
 11. 그 밖에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공급업자, 물류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축적·제공하는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가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국가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제49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관 재난관리자원을 지체 없이 동원하거나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시·도지사의 동원명령) ① 시·도지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는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59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
- ② 시장·군수·구청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시·군·구 차원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1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 ①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도지사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시·도 차원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2조(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事後精算)한다.

③ 국가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54조(손실보상 및 치료 등) 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동원훈련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③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정보센터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원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원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6조(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무) 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인적자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급업자
4. 물류기업
5. 그 밖의 재난관리자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지도 및 감독)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59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3. 정보센터운영기관

4. 관리기관의 장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하여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자

2.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3.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자원관리관·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60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정보의 입력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5.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6.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제공 또는 공개

제62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63조(벌칙)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수출하거나 국외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용한 자
4. 제57조를 위반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6. 제52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6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5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망관리정보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9213호, 2023.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47조에 따른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②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4조에 따른 관할구역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2. 제45조에 따른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제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례)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2. 제41조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3. 제43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제4조(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은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인적·물적 자원”을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의2 중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을 “관리”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3제1항제3호 중 “재난경감·상황관리·자원관리·유지관리”를 “재난경감·상황관리·유지관리”로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인력·장비 및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구호품”을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시설 및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비와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인력·장비·자재”를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장비·물자를 제공”을 “재난관리자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중 “인력·장비”를 “긴급구조요원·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력·장비·물자”를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호 중 “보유자원관리”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인력·장비·시설의 확충”을 “재난관리자원의 확보·확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인력·장비 등 자원”을 “재난관리자원 등”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③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VI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완주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요지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372, 2023. 12. 28., 전라북도 완주군]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1. 24. 선고 2007추141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완주군조례안”이라 한다)은 군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소송’이란 군민이 당사자인 소송 중 완주군 공익소송 지원위원회가 군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고 하면서 각 목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가목),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나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완주군조례안 제2조제2호의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사무가 완주군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확정하는 단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군민에게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익(公益)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가 제한되는 외교·국방·사법(司法) 등의 국가사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소송’의 소송물이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귀 군의 사무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귀 군의 공익소송 지원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의 소송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영역에서 공익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수단이 존재하는 점,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국가 차원의 법률 구조 수단이나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28. 의견제시 21-0261 참조).

따라서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꽃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꽃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꽃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꽃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꽃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꽃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390, 2023. 12. 28.,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5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덩굴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도에서는 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지사가 같은 항을 근거로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1. 24. 선고 2007추141 판결 참조), 제주특별법 제354조제1항에서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곶자왈을 보전하는 사무는 제주자치도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도에서는 꽃자왈을 보전하는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귀 도에서 그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꽃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꽃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꽃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도지사가 꽃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꽃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꽃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됨을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꽃자왈 보전)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덩굴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꽃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꽃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꽃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꽃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표지설명



충남도의회 충혼탑 참배로 갑진년 힘찬 출발 - 충남보훈공원에서 헌화·분향... 순국선열 기리고 도민의 건강과 행복 기원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일 오전 홍성군 소재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갑진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홍성현 1·2부위원장, 상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과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충혼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새해를 맞아 충남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조 의장은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충남도민 모두 평안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며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도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 충남도의회는 올 한해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의 정 정 보

- ❖ 발 행 월 : 2024년 1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